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차재홍 의원)

의안 번호	15-102
----------	--------

발의년월일 : 2015. 10. 22.

발 의 자 : 차재홍·백남환·서종수·
이동주·이필레·이학래·
한일용·허정행 의원(8명)

1. 제정이유

어린이놀이기구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주체의 의무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내용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규정(안 제1조)
- 나. 어린이놀이기구 및 시설 등에 대한 용어의 정의(안 제2조)
- 다. 관리계획 수립 및 행위의 제한사항(안 제3조, 안 제4조)
- 라. 안전감시망 구축 및 안전관리 의무이행(안 제5조 및 안 제 6조)
- 마. 업무의 분담 및 관리 감독(안 제7조 및 안 제 8조)
- 바. 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안 제9조)
- 사. 예산확보 및 표창 등(안 제10조 및 안 제11조)

3. 관계법령

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제2조의2, 제12조, 제15조, 제20조
~ 제22조

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4.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5.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5.10.22. ~ 10.26. (제출된 의견 없음)

나. 조례안 : 불임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
4.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
5. 어린이놀이기구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6. 그 밖의 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

③ 어린이놀이기구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흡연, 음주, 가무, 방뇨행위 및 애완동물 동반 출입행위

2.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
4. 물건 적치 및 노점에 따른 상행위
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감시망 구축)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활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 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관련 업무부서에서 담당하게 한다.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7.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8.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9.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10. 그 밖에 담당업무 부서 지정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

제8조(관리 감독) 제7조의 시설 담당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 할 경우 안전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

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항목

구 분	점 검 항 목
부대 시설	○ 울타리, 의자, 가로등의 고장 또는 파손
	○ 화장실의 파손 및 청결한 상태
	○ 식수대, 쓰레기 처리대의 파손 및 청결
	○ 놀이터 표지판의 파손 및 내용물 지워짐
놀이터 공통 사항	○ 모든 놀이기구 및 시설의 낙후, 휘어짐
	○ 움직임이 많은 영역에 밧줄이나 전선의 늘어짐
	○ 놀이터 안은 전기, 고압선, 유독물질, 유리조각, 돌부리 등의 위험물질 존재
	○ 유실 모래의 보충 및 굳은 모래 부수기
	○ 놀이터의 배수, 쓰레기 및 입구 주차 상태
	○ 기둥의 고정 및 조임 장치의 조임 상태
	○ 기구 및 시설의 베어링의 윤활
	○ 기구 및 시설의 도장상태
그네	○ 그네고리('S' 혹)의 풀림 및 파손
	○ 그네 좌석판의 파손
	○ 그네 회동구 베어링의 윤활유 주입 상태
	○ 그네 줄의 꼬임
	○ 그네 체인의 모양 변형
	○ 그네 줄의 균형 상태
	○ 그네 추락지대까지 바닥재의 충분 상태, 추락시 상해가능 장애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낄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금속재질의 녹 발생 상태
	○ 금이 간 곳의 존재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친면의 존재
미끄 럼틀	○ 미끄럼틀 보호벽(난간)의 파손
	○ 미끄럼틀 계단의 파손
	○ 미끄럼틀 활주판의 요철 및 파손

구 분	점 검 항 목
	◦ 착지판의 흠 및 물의 존재
	◦ 신체부위가 깎 수 있는 틈새의 존재
	◦ 녹슨 부분은 없는가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진 곳은 없는가
	◦ 돌출부나 거친면은 없는가
	◦ 볼트나 나사가 풀리지 않았는가
흔들 놀이 기구	◦ 시소의 무게 균형의 정확성 (각도가 기준치의 초과)
	◦ 충격 완화용 타이어의 파손
	◦ 지지대와 시소판의 연결부위의 원활성 및 회전성
	◦ 시소가 좌·우로 흔들림
	◦ 손잡이가 흔들림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깎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기구의 금이 간 곳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회전 놀이 기구	◦ 회전상태(베어링 상태)
	◦ 손잡이의 파손
	◦ 회전판이 정상기준에서의 기울어짐이나 흔들림
	◦ 회전축이 강도
	◦ 회전축의 움직이는 부분의 노출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깎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정글집	◦ 파이프가 휘어짐

구 분	점 검 항 목
건너는 기구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금속부분의 녹슴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오르는 기구	◦ 그물망(체인, 타이어) 사이의 연결 부위 고정성
	◦ 손잡이(파이프, 체인, 타이어)의 파손(갈라짐, 휘어짐, 영킴, 벗겨짐)
	◦ 지지대가 느슨해져 있지 않은가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걸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
매달리는 기구 · 공중 놀이 기구	◦ 손잡이 파이프(혹은 링)가 파손(갈라짐, 휘어짐)
	◦ 하강지역에 모래 높이 및 량의 적정성
	◦ 신체부위(손, 발, 머리)가 걸 수 있는 틈새
	◦ 금속부분의 녹슴, 목재부분의 부식
	◦ 금이 간 곳은 없는가
	◦ 페인트 칠이 벗겨짐
	◦ 돌출부나 거칠음
	◦ 볼트나 너트 등의 나사풀림